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직권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실시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직권실태조사 결과 및 법 위반혐의 사업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5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원사업자 4,000개 업체(제조 2,400개, 건설 1,600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도급거래를 한 원사업자당 평균 6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 16,000개 업체(제조업 9,600개, 건설업 6,400개)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의 내용은 '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 하도급대금의 현금·어음비율 등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것이었다.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에서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2,761개 업체 중 2,261개 업체(81.9%)가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급사업자의 확인조사 결과 875개의 원사업자가 일부 조사항목에서 허위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53개 업체가 법 위반혐의 업체로 추가되어 법 위반혐의업체의 총 수는 2,414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사업자의 허위응답 현황 >

(개, %)

구분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원사업자 수 (A)	허위응답 업체 수 (B)	비율 (B/A)	허위응답 항목 수별 업체 수									
				1	2	3	4	5	6	7	8	9	10
계	2,043	875	42.8	539	154	75	64	17	11	7	3	3	2
제조	1,115	556	49.9	345	99	48	42	12	3	3	1	3	0
건설	928	319	34.4	194	55	27	22	5	8	4	2	0	2

< 법 위반혐의 항목 수별 업체 수 >

(개, %)

구분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원사업자 수 (A)	위반혐의 업체 수 (B)	B/A	위반 항목 수별 업체 수									
				1	2	3	4	5	6	7	8	9	10 이상
계	2,761	2,414	87.4	552	510	374	337	256	161	97	55	25	47
제조	1,616	1,396	86.4	340	295	218	198	157	94	53	23	8	10
건설	1,145	1,018	88.9	212	215	156	139	99	67	44	32	17	37

주) 법 위반 총 항목 : 제조 18개 항목, 건설 22개 항목

수급사업자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법 위반혐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선금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의 비율이 전체의 56.3%(제조 53.4%, 건설 60.8%)로 가장 높았으며, 하도급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의 비율도 24.8%(제조 32.4%, 건설 1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총 2,414개 원사업자 중 허위응답 항목 수가 5개 이상인 업체로서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혐의가 있는 37개 업체(제조 20개, 건설 17개)와 원사업자 서면조사시 조사표를

미제출한 9개 업체, '99년도 서면조사 결과 자진시정 요청에 대하여 불응한 3개 업체 등 총 49개 업체에 대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9일 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조사 대상업체 이외의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혐의 사실을 통보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법 준수의식도 고취시키며, 수급사업자의 실질적 보호와 서면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자진시정 불응업체에 대해서는 이행 완료시 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혐의 행위의 유형별 비율 >

• 제 조

위반혐의 계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대금지급 관련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관세 미환급, 부당감액 등)	내국 신용장 미개설	수령거부 및 빌주취소	물품 구입 강제	부당한 결제청구	부당한 대물변제	탈법행위
1,478	479	63	789	79	30	5	5	26	2
(100.0%)	32.4%	4.3%	53.4%	5.3%	2.1%	0.3%	0.3%	1.8%	0.1%

• 건 설

위반혐의 계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대금지급 관련 (선금금 미지급, 부당감액,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인수거부 및 위탁취소	물품 구입 강제	부당한 결제청구	대금지급 미보증	부당한 대물변제	탈법행위
962	127	66	585	17	9	5	123	18	12
(100.0%)	13.2%	6.9%	60.8%	1.7%	0.9%	0.5%	12.8%	1.9%	1.2%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등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의 자회사 및 재투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구조조정 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 까지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동 조사에서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제공하거나 인력지원 등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거래 강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계약제도와 진입장벽 등의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 조사대상 공기업 >

부당내부거래	포항종합제철(15), 한국전기통신공사(9), 한국전력공사(7), 국민은행(6), 주택은행(7)
불공정거래행위	한국전력공사, 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 ()는 자회사 수

인터넷 쇼핑몰의 현황 및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동안 종합쇼핑몰 165개와 전문쇼핑몰 215개를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일반현황과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사이버소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직권조사 실시 결과, 인터넷 쇼핑몰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이행여부 실태에 있어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를 11.6%가 미표시하였고, 영업장 주소를 미표시한 쇼핑몰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품의 청약철회

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쇼핑몰이 24%, 제품을 반환받은 다음 2일 이후에 대금을 환불하는 쇼핑몰이 33%로 나타났고, 쇼핑몰 약관을 미표시하거나 약관이 없는 경우가 31%, 공정위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쇼핑몰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광고 신고 74건 중 부당한 비교가격 표시가 23건, 상품의 품질·효능·효과 등에 대한 부당광고 8건, 기타 43건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부당성 여부를 검토·확인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중요정보고시 업종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의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중요정보를 표시·광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는 고시 적용대상을 현재의 10개 업종에서 21개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예정 업종은 '98년 「품질경영촉진법」(산업자원부 소관 법률)상의 「품질표시 의무화 규정」이 삭제된 주요 생활용품과 최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설문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제조업, 보석류제조업, 자동차부품업, 보험업, 투자자문업, 유치원, 산후조리원, 건강보조식품업, 공동주택업 등 11개 업종이다.

금번 개정고시에 추가할 업종별 중요정보의

주요 항목으로는 '환불·교환 가능 여부와 방법', '제품의 품질(소재)', '제품인지 여부' 등이 있으며, 개정고시가 확정될 경우 적용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자신의 표시·광고 내용에 해당 중요정보 항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고시 개정절차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관련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정절차 이외에 보다 세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가예정 업종의 사업자단체 또는 대표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및 광고대행사의 실무전문가가 참여하는 업종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공청회 개최를 거쳐 12월중 위원회에 상정하여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법 다단계 판매사업자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단계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고, 집행기관인 일선 시·도에 지도·단속방침을 시달하기로 하였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의 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단계 판매는 물품을 구입한 후 2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판매사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 풍조에도 그 원인

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단속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법 집행의 어려움을 악용하여 악덕 사업주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우선 다단계 사업자 가운데 불법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일선 시·도에서는 다단계 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검찰에도 법률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하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벌금”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각종 제재조치를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개정 추진중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중 다단계 판매업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단계 판매사원 모집시에 대해 회사의 평균 수당 등 판매원 가입자의 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의 공개제도를 도입하며,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직권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행위 발견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며,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시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을 의무화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소매상간 공정경쟁 기반 조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자금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중소소매상들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과다한 경품제공행위와 미끼상품의 염매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단속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사행심 조장, 과소비 억제 등을 위하여 9월부터 소비자현상경품의 1인당 가액한도를 1백만원 이하로 제한한 바 있으나, 아직도 대형 유통업체의 경품제공행사가 지나친 면이 있다고 판단,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백화점 및 할인점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에 착

수하여 경품가액한도 초과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업계의 동향을 분석하여 업계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1개 업체가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경품가액의 총 한도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형 백화점·할인점 등이 각종 음료수, 라면, 쌀, 채소 등 기본 생필품을 구입원가 이하로 판매, 이를 미끼로 고객들을 자기 매장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부당 염매행위로 제재함으로써 지역 중소소매상이 질식되는 현상을 방지할 예정이다.

자동차제조 3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레져용자동차의 선택사양품목(옵션품목)을 패키지로 판매하여 소비자가 품목별로 선택할 수 없도록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원하지 않는 품목을 구입토록 강제한 기아자동차(주), 대우자동차판매(주), 현대자동차(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법 위반사실을 신문공표토록 하였다.

이들 레져용자동차제조 3사는 선택사양품목을 묶어서 패키지로 하거나, 패키지에 선택사양 품

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레져용자동차를 판매한 바,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자유로운 사양품목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며, 기술적으로 분리·판매가 가능한 선택사양품목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이므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사양 품목을 구입토록 강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용어풀이

사업활동 방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거래상대방의 기술의 부당이용, 거래상대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예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있음. 또한 동 법은 ①사업자가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 ②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③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심사지침」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있음.

엘지정보통신(주)의 부당인력스카우트에 대한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삼성전자와의 GSM S/W 연구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채용을 시도한 엘지정보통신(주)(현 엘지전자)의 행위가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정보통신은 삼성전자에서 GSM S/W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던 4인에게 계약금으로 1억 5천만원 또는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0년 3월 31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4월 11일 이들의 통장에 1억원 또는 8천만원을 입금한 바, 엘지정보통신의 이들 4인에 대한 채용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경쟁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4인이 삼성전자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에 미리 입금한 점, 둘째, 동 4인이 받기로 한 1억 5천만원 또는 1억 2천만원은 해당 인력의 연봉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한 점, 셋째, 채용방법에 있어서 인터넷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이미 삼성전자에서 전직하여 엘지정보통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통하여 동 4인에게 전직을 제의한 점, 넷째, 엘지정보통신은 부족한 GSM 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과다한 금전 제공 등을 제의하면서 유인하고자 한 점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서 동 4인이 한 모델(SGH-2000)의 개발 완료 후 후속 모델(WIP)의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엘지정보통신의 스카우트 시도로 인하여 후속 모델의 개발이 약 10개월 정도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수출도 지연되는 등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0년 10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0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1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

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회사간 신규채무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0년 10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2개사가 신규편입되고, 1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0년 1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

열회사 수는 2000년 10월 2일 584개사에서 585개사로 증가하였다.

◆ 2000년 10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0. 10. 2	편 입				제 외					증 감	2000. 11.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기타	계		
전 체	584	1	1	-	2	-	1	-	-	1	1	585
1~4대	173	-	-	-	-	-	-	-	-	-	-	173
5~30대	411	1	1	-	2	-	1	-	-	1	1	412

◆ 2000년 10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 편입 : 2개사(지분취득 1, 회사설립 1)

◎ 제외 : 1개사(지분매각)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증 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동 국 제 강	-	-	-	부산벤처기술 투자(주)	기타 금융업	지분매각	△1
현대산 업개발	세일기계(주)	건설, 토목공사 기계 임대업	회사설립	-	-	-	1
영 풍	(주)에스티아이	전자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주식취득	-	-	-	1
계	2			1			1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0. 11. 13 ~ 2002. 11. 12

방이준(한국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 파견근무

·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

- 2000. 11. 3 ~ 2001. 11. 2 기간 연장

유 철(관리관)

· 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

- 2000. 10. 21 ~ 2001. 10. 20

박선광(서기관)

◎ 서기관 전보

· 심판관리2담당관

김순종(前 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

· 유통거래과장

옥화영(前 심판관리2담당관)

· 정책개발기획단 업무지원

한철수(前 유통거래과장)

◎ 사무관 전보

· 독점관리과

이 철(前 관세청)

◎ 사무관 승진

· 기획예산담당관실

한철기